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7.

발 의 자 : 윤상현 · 김선교 · 곽규택
이헌승 · 조배숙 · 김형동
신동욱 · 나경원 · 김재섭
김소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, 일정한 소재확인 절차와 장기간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만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, 사기죄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 이 경우 피해자는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판결 선고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, 국가 역시 구인장 발부, 소재탐지, 송달 반복 등 과도한 사법행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.

특히 피고인이 이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음에도 이후 임의로 불출석하거나, 변론이 종결되어 실질 심리가 종료된 뒤 선고기일에만 출석하지 않는 경우까지 현행법상 불

출석재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),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(안 제23조제4항), 사기죄 등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인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(안 제23조제1항 및 제5항),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.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.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에 의할 수 있고, 이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.

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형법」 제347조,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
2. 「법원조직법」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
3.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「형법」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

제23조의2제1항 중 “제23조 본문에”를 “제23조제1항, 제2항 또는 제4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에 의할 수 있고, 이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.

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형법」 제347조,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
2. 「법원조직법」 제32조제1항 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
3.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「형법」 제11

